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15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가를"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		
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対) ①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u>인가를</u> 받은 수도사업 또는	1.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u>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			
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u>인가를</u> 받은 수도사업의 급	2.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u>		
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			
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